부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0년 11월 5일 김한태 의원 등 23인

나. 회부일자 : 2010년 11월 5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166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9차 행정복지위원회(2010년 12월 20일) 상 정 수정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김한태 의원)

□ 제안이유

○ 밝고 명랑한 신뢰받는 민주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진실·질서·화합을 바탕으로 바르게살기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민주시민의식 함양과 건전한 생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·지원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조례의 제정 목적을 정함. (안 제1조)
-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. (안 제2조)
- 바르게살기운동 부천시협의회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대 상사업의 범위를 정함. (안 제3조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조례안 발의배경은?	○ 국민운동단체 활성화를 위한 기 본 조례임.
○ 관련 단체로부터 요구를 받았는 지?	○ 그런 사실 없음.
○ 관련 단체와 조례내용에 대해 협의는 하였는지?	○ 협의했음.
○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대해 알고 있는지?	○ 자세히는 알지 못함.
○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이 비영리민 간단체에 해당되는지?	○ 해당됨. 그러나 비영리단체는 지역에서 봉사활동의 역할 등을 볼 때국민운동단체와 별개로 생각함.
○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과 부천시 사회단체보조금조례에서는 국민운동단체만 아니라 모든 단체가 해당되는 것임. 국민운동단체가 활동을 많이 한다는데 다른단체도 많이 함. 또한 국민단체가 보조금을 많이 받아서 그만큼 활동이 많다고 생각되는데?	,
○ 1,500여만원은 순수 운영비이고 그 외에도 사회단체보조금 등으로 여러 가 지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.	
○ 새마을, 자유총, 바르게법 제정은 언 제인지 아는지? 폐지안이 국회에 제출된 사실을 아는지?	

4. 토론요지

가. 반대토론

- 조례가 없어도 상위법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고 국민운동단체는 오히려 특혜로 볼 수 있는 지원을 받아 왔다고 생각함. 따라서 단체간에 불신과 반목 그리고 의원간의 입장차이 등이 있으므로 충분한 여론을 수렴한 후 조례 제정을 검토하도록 부결하는 것이 타당함.
- 국민운동단체의 지역봉사 역할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하고 있음. 논란의 핵심은 지원조례가 없어서 단체의 격이 떨어지고 예산지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님. 이번 조례는 보다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므로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함.
- 기 재정되어 있는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나 이번에 상정된 바르 게살기, 자유총연맹 지원 조례들이 단체의 특성이 담겨 있지 않고 그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조례 제정의 의미를 알 수 없음.

나. 찬성토론

-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그만큼 명분과 지역사회의 역할이 있었음이라 생각함. 회원들의 사기앙양 등을 위한 포괄적인 내용이므로 일부 불 부합하는 조항만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함.
- 조례와 예산을 결부하는 것은 맞지 않음.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단체 활동이 활성화되고 또한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 으므로 가결하는 맞음.
- 국민운동단체는 각각의 특성이 따로 있음.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조례 를 제정하여 통합하는 것은 단체운영 목적이나 기능에 부합되지 않 으므로 가결이 바람직함.

5. 심사결과: 『수정의결』

6. 소수의견 요지

- 국민운동단체별 개별 조례는 국민운동단체 통합 조례를 신속히 제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.
- 7. 기타 **필요한 사항** : 없음

부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지원 조례안 수정안

의 번	안 호	68
의 연 _월	결 일일	2010. 12. 20

제안년월일: 2010년 12월 20일

제 안 자 : 행정복지위원장

1. 수정이유

○ 조례안 내용 중 일부 문맥상 불부합된 조항을 수정함.

2. 수정 주요골자

- "그 산하단체(회원단체 및 그 하부조직 포함)"을 "그 산하 회원단체"로 수정함.(안 제2조제1호)
- "「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」제3조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"를 "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바르게살기운 동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「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」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"로 수정함.(안 제3조)

부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지원 조례안 수정안

부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제1호 중 "그 산하단체(회원단체 및 그 하부조직 포함)"을 "그 산하회원단체"로 한다.

안 제3조 중 "「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」제3조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"를 "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「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」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"로 한다.

위의 수정부분 이외의 『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조례안과 같음.』

신·구조문 대비표

조 례 안	수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"조례안과 같음"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'바르게살기운동조직'이란 바르	1 .
게살기운동 부천시협의회와 <u>그 산</u>	
하단체(회원단체 및 그 하부조직	<u>그 산</u>
포함)를 말한다.	<u>하단체를</u> 말한다.
제3조(사업의 육성과 지원) 부천시	제3조(사업의 육성과 지원) 부천시
장(이하 "시장"이란 한다)은「바르	장(이하 "시장"이란 한다)은 바르게
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」제3조에 따	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바르게살기
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	운동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「바르
바르게살기운동사업의 활성화를 위	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」제3조에 따
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	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
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.	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.
I .	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지원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」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·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·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밝고 건강한 사회 건설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바르게살기운동조직"이란 바르게살기운동 부천시협의회와 그 산하단체를 말한다.
 - 2. "바르게살기운동회원"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.
 - 3. "바르게살기운동사업"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 하는 사업을 말한다.
- 제3조(사업의 육성과 지원) 부천시장(이하 "시장"이란 한다)은 바르게살기 운동조직의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「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」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.
 - 1.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
 - 2.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・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
 - 3.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훈련경비
 - 4.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및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4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